

2026년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행정안전부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6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할 (예비)마을기업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마을기업의 정의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2025. 11. 21.

세종특별자치시장

1

지정 개요

○ (지정유형)

- (세종시장 지정) 예비마을기업
- (행안부장관 지정)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 (지정규모) 총 3개소 내외 ※ 예산 및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기간) 선정 마을기업별 약정체결일 ~ 2026. 12. 31.

○ (지원내용)

- 세종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교육, 컨설팅 등 참여 가능
- 마을기업 지정유형 및 회차에 따라 사업비(보조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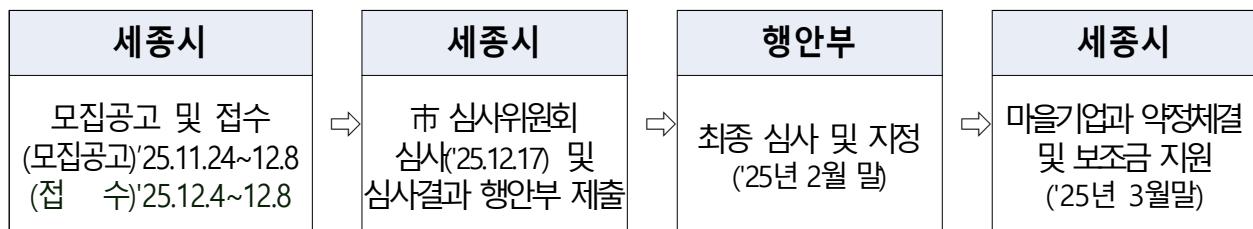
구분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보조금	지원없음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보조금의 20% 이상(청년마을기업은 10% 이상)		

※ 심사 결과에 따라 당초 마을기업 신청 계획과 달리 지원 금액과 내용 조정 가능

※ 과세사업자인 경우 사업비는 공급가액만 집행가능하며, 자본경비는 물품검수 등 완료 후 지급됨

2

추진일정 및 절차



□ 공고 및 신청 접수

- (공고기간) 2025. 11. 24(월) ~ 12. 8(월) 18:00까지 [16일간]
- (접수기간) 2025. 12. 4(목) ~ 12. 8(월) 18:00까지 [평일, 3일간]
 - ※ 형평성에 따라 2025. 12. 8(월) 18:00 이후 접수는 절대 불가하므로 기간 엄수 요망
 - ※ 신청 지원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 044-251-3213)
- (신청방법)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방문제출(우편·택배·인터넷 신청 불가)
- (접 수 처) 세종시청 기업지원과(세종시 시청대로 180, 세종우체국 2층)

□ 서면심사 및 적격검토

- (기간) 2025. 12. 9(화) ~ 12. 16(화)
- (내용)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확인 및 적격여부 검토 (필요시 현장 확인)

□ 市 심사위원회

- (기간) 2025. 12. 17(수) 14:00~
- (방법) 대면심사 원칙, 심사 대상 기업의 사업계획 발표 후 심사
- (결과) 예비마을기업 지정 여부 및 행정안전부 추천 마을기업 확정

□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마을기업 지정 여부 최종 결정

3

지정요건 및 제외대상

□ 공통 지정요건 ※ [붙임1] 참조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4가지 원칙을 고루 갖추고, 회원이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읍면 단위, 동지역)으로 구성된 법인

※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 예비마을기업은 5인 이상 참여 非법인 공동체(마을 또는 단체) 등도 가능하나,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하며,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고,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출자금액은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

- 출자자는 5인 이상(10인 이상 권장)이어야 하며, 회원의 70% 이상(전체 동 지역 8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 주민이어야 함

□ 유형별 지정요건

○ (신규(1회차) 마을기업)

-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 대표자 포함 5인 이상 입문교육(7시간)을 수료
- 예비마을기업일 경우 정산이 완료된 기업

※ 마을기업 지정 후 기초교육(7시간), 심화교육(3시간) 추가 이수하여야 함

○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 신규 마을기업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었고, 운영실적이 우수한 마을기업
- 대표자 포함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을 수료

※ 마을기업 지정 후 심화교육(2시간) 추가 이수하여야 함

○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 재지정 마을기업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었고, 운영실적이 우수한 마을기업
- 대표자 포함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을 수료

※ 마을기업 지정 후 심화교육(2시간) 추가 이수하여야 함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 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 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 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 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 예비·신규·재지정·고도화, 재도약,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제출서류

구분	신청 서류							
기본 서류	공통	① 사업신청서(서식1) : 인쇄본(방문제출) ② 마을기업 회원명단(서식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회의록(사업 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③ 법인 명의 보조금 통장 사본(자부담 입금) - 기존 개설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통장 잔액을 0으로 정리한 후 입금 ④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모든 회원의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현재주소만 기재) 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활용동의서(서식3,4)						
	추가 (회차별)	<table border="1"> <tr> <td>1회차</td><td>입문교육(7시간) 이수 확인서</td></tr> <tr> <td>2회차</td><td>전문교육(4시간)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1회차), 재무제표(전년도)</td></tr> <tr> <td>3회차</td><td>전문교육(4시간)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2회차), 재무제표(전년도)</td></tr> </table>	1회차	입문교육(7시간) 이수 확인서	2회차	전문교육(4시간)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1회차), 재무제표(전년도)	3회차	전문교육(4시간)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2회차), 재무제표(전년도)
1회차	입문교육(7시간) 이수 확인서							
2회차	전문교육(4시간)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1회차), 재무제표(전년도)							
3회차	전문교육(4시간)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2회차), 재무제표(전년도)							
기타 증빙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③ 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④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⑤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보조금 관련 서류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공고 마감일(2025.12.8)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 신청 사전에 반드시 행정안전부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 기업(단체)에 있음
- 신청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음(기한 내 미보완 시 반려 처리)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현지조사, 행안부 현장실사 등 심사 절차에 협조해야 함
- 심사 내용 등 심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상기 공고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따름
- 기타 문의 사항은 세종시청 기업지원과(☎044-300-4834), 세종시 마을기업 지원기관(☎044-251-3213)으로 문의

붙임1

마을기업 지정요건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만족하고 지속 유지하여야 함

-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지정요건	
1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2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3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4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5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지정요건	
1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4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
5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지정요건	
1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2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3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어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행정동 기준,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 재직증명서의 직장주소 등을 확인

-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지정요건	
1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2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의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3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붙임2 심사기준

○ 예비, 1회차(신규)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구분	심사지표
공동체성	30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자수 : (상) 20인 이상 (중) 10~19인, (하) 5~9인 ■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 입문교육 이수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 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정도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기업성	20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 (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10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	최대 5	3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중도포기·취소한 경우 제외) ■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대상사업 : 참고) ■ 상용근로자수 : (3) 5인 이상 (2) 4~2인 (1) 1인
		2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p>※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p>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市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가점 대상 공동체 사업

구분	소관	사업명
1	국조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2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3	국토부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
4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5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6	농식품부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
7	농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8	농식품부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9	농식품부	귀농귀촌 지원사업(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포함)
9	문체부	관광두레 사업
10	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사업
11	복지부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12	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13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
14	산림청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5	여가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16	해수부	자율어업공동체 선정 및 육성
17	해수부	어촌뉴딜300
18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9	국가유산청	우리고장 국가유산(무형유산 포함) 활용 사업
20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축전 및 활용 프로그램 사업
21	행안부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
22	행안부	정보화마을
23	행안부	청년공동체 육성 사업
24	행안부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 (주민자치회가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법인 포함)
25	기타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서 공동체를 육성 또는 지원하는 사업 (가점 인정 여부는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공공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역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관리의 충실성(회계 관리, 지도·점검 협조 등 포함) ■ 계획대비 성과 달성을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 <p>※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p>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市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공공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역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적 포함)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사업 관리의 성실성(회계 관리, 지도·점검 협조 등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 <p>※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p>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市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붙임3

마을기업 회계비목 및 사업비 편성 기준

보조 비목명	보조 세목명	세부항목 및 설명	편성제한
인건비	보수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총 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 사회서비스 제공형, 마을관리형은 50%까지 가능 - 등기부등본 상 임원에게 인건비성 경비 지급 불가
	일용임금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운영비	일반 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기타항목 총합 제한
		2. 인쇄비 및 유인비 - 책자, 전단,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홍보용 물품제작비	- 포장재 제작비는 사업비의 10% 이하로 편성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기타항목 총합 제한
		5. 공고료 및 광고료 -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6. 전문가 활용비 - 외부 강사료 및 전문가 컨설팅 비용	외래강사, 외부전문가에 한하여 지급 가능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기타항목 총합 제한
	임차료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토지와 건물에 대한 비용은 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시설장비 유지비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
	재료비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식물 및 종자 등 포함)	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시설비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등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직영공사일 경우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3.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 시설비 중 설계비는 공사비의 4% 미만으로 편성 - 임차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지 않음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1. 건물 및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기계기구 및 사무집기류 4.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 마을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 하며, 한시적 필요 물품은 단기 임대 활용 -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자산성 물품은 취득 불가

※ 기타 항목(사무용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의 총합은 **총사업비의 3% 이내로 편성**

※ **예비마을기업**은 자본적 성격의 경비(자산구입비, 시설비 등)와 인건비, 토지·건물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편성할 수 없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등의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에 수반되는 비용은 **마을기업의 부담으로 함**